

2020학년도 국내현장실습(계절제_하계) 실시 안내

(학생 및 학과공지용)

2020학년도 국내현장실습(계절제_하계)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각 학과 및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실습기관 연계 및 학생모집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실습유형 및 신청기간

가. 실습유형

1)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

학과(교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나. **현장실습 참가신청** : 2020. 06. 1.(월) ~ 06. 17.(수)

다. **등록비 납부기간** : 2020. 06. 22.(월) ~ 06. 24.(수)

등록비 납부 안내

1) 1학점당 2만원(4주 : 4만원, 8주 : 8만원)

2) 납부계좌 : 대구은행 개인별 가상계좌

가상계좌 확인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학생(ID, 비밀번호)→취업/산학
→국내현장실습→가상계좌조회

*** 가상계좌 부여는 학생의 실습신청서 상태가 '대기'일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실습신청 학생은 등록비 납부기간 전까지 반드시 교수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신청방법 :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실습참가 신청(세부사항 아래 내용 참조)

마. 참여인원 : LINC+사업 참여학과 및 비참여학과를 포함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선발

2. 교과목 및 학점

교과목명	교과구분	과정	학점	실습요건
국내현장실습(2)	일반선택	계절제	2	4주 이상(160시간 이상)
국내현장실습(3)	일반선택	계절제	4	8주 이상(320시간 이상)

3. 실습기간

가. 계절제 현장실습은 4주(160시간) 및 8주(320시간)의 실습이 가능

나. 기간별 실습일자

실습기간	시작일	종료일	비고
4주	2020. 07. 06.(월) 이후	2020. 08. 31.(월) 이전	· 기간 내 4주 실습 가능 · 졸업예정자는 정해진 4주 기간 (2020.07.06.~2020.08.02.) 실습만 신청 가능
8주	2020. 07. 06.(월) 이후	2020. 08. 31.(월) 이전	· 기간 내 8주 실습 가능
(* 실습기간 설정시 [별첨1] 현장실습기간 조건표 참조바람)			

4. 신청자격

가. 2학기(1-2학기) 이상 8학기(4-2학기) 이하 재학생 참가 가능

(단, 휴학생,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신청 불가)

나. 신청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 현장실습 등록비를 납부 완료하여야 함

5. 참가자 지원사항

가. 참가학생 1인당 실습수당 지급(실습종료 및 학점인정 처리 후 지급)
: 4주(40만원) / 8주(80만원)

*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으로 수업의 형태를 갖추어 운영되므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실습학생지원금은 실습기간 중 일비 등의 지원을 위해 지급하며 급여의 성격은 아님.

나. 실습기간 중 학생실습보험 가입

6. 오리엔테이션 (*현재 미정)

1) 일시 : 추후안내

2) 장소 : 추후안내

7. 학과(지도교수) 협조 요청사항

가. 현장실습기관의 발굴, 섭외 및 참가희망 학생과의 매칭

나. 현장실습 교육상황의 지도, 점검 및 지도평가

다. 학생의 현장실습 참가신청에 대한 실습지도교수 승인

라.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의 경우 신규 실습기관의 참여신청서 및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실습기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요망

8. 유의사항

- 가. 8학기 재학생의 경우 **2020. 07. 06 ~ 2020. 08. 02 기간의 4주 실습만** 가능하고 실습을 완료한 후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나. **조기졸업자의 경우 조기졸업확정 후 즉시 센터로 공지하여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바람**
- 다. 현장실습은 국내 및 해외현장실습을 합산하여 재학 중 최대 36학점 범위 안에서 인정하되, 전공학점으로는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라. 하계 국내현장실습 이수과목은 교과구분이 '일반선택'으로 인정
- 마. 현장실습 기간 중에는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없음
(단, 가상강좌는 현장실습을 포함한 6학점 이내만 수강 가능함)
- 바. **개인사유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 진행이 불가능할 시, 반드시 실습 시작 후 2주 이내에 센터로 연락 후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 시 학점 미인정(fail)처리 됨을 유의바람.**
- 사. 현장실습 수행 이전 또는 실습 진행 중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실습인정이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바람.
- 아. 현장실습 수당지급 등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자를 조기 마감할 수도 있음

※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1 현장실습 개요

1. 대상학과

현장실습은 전학과를 대상으로 하며, LINC+사업 4차년도 현장실습 참여학과의 3,4학년 재학생의 참가를 권장함.

가. LINC+사업 4차년도 현장실습 참여학과

단과대학	학과(부)
인문대학	* 한국어문학과, 중국어중국학과, 일본어일본학과, 러시아어러시아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체육학과, 스포츠레저학과, 골프산업학과
DU인재법학부	DU인재법학부, DU인재법학부(법학, 공직법학전공) DU인재법학부(공법학전공, 사법학전공, 공공안전법학전공)
행정대학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도시행정학과, 도시·지역계획학과, 부동산·지역학과
경상대학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금융보험학과, 관광경영학과, 호텔관광학과
사회과학대학	국제관계학과, 사회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과학생명융합대학	수리빅데이터학부(수학전공), 수리빅데이터학부(통계빅데이터전공), 화학·응용화학과, * 생명과학과, 생명환경학부(원예학전공), 생명환경학부(바이오산업학전공), 생명환경학부(식품환경안전학전공), 산림자원학과, 동물자원학과, 물리학과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식품공학과, 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 기계공학부(기계설계공학전공), 생명공학과, 화학공학과, 도시·조경학부(조경학과), 도시·조경학부(도시계획공학전공), 신소재에너지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전자공학전공, 전자제어공학전공), ICT융합학부(정보통신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인공지능전공), 컴퓨터정보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조형예술대학	융합예술학부(현대미술전공), 융합예술학부(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학과), 융합예술학부(생활조형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재활과학대학	직업재활학과, 언어치료학과, 재활심리학과, 재활공학과, 재활건강증진학과
성산교양대학(S-LAC)	자유전공학부
미래융합대학	6차산업학과

* 한국어문학과 : 국어국문학과, 국제한국어교육과 포함
 * 생명과학과 : 의생명과학과 포함

나. 현장실습 제외기준

- 1) 학과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학과의 현장실습은 제외함
- 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 시험대상 학과 등
 -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안경사 등
- ②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관련 학과 등
- ③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 시험대상 학과 등
- 2) 학과 특성상 계절제 현장실습을 선수로 이수하고 실습내용을 활용한 세미나, 발표 등을 통하여 차학기에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실습을 이수하고 학점을 부여받은 학생에 대한 실습은 제외함
- 3) 현장실습 수행 이전 또는 현장실습 진행 중 취업된 학생이 해당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
- 4)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
- 5)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6) 기타 운영형태
 - ① 사회봉사, 현장체험/답사, 견학 등 현장실습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단기체험 활동 등은 제외
 - ② 실습기관 또는 실습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외
 - ③ 해당 전공과의 연관성이 없는 현장실습은 제외
 - ④ 대학과 현장실습 기관 간 현장실습에 관한 협약 또는 문서를 근거로 하지 않는 현장실습은 제외

2. 실습기관

가. 실습기관의 자격 요건

- 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을 우선으로 함
-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한 기관
-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 필수사항: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 개정에 의거하여 대학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가능한 기관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 고시에 따라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수업의 형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매 실습과정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은 실습과정 신청 시 실습운영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하여야 함.

나. 참여제외 기업(기관)

- 텔레마케팅, 골프장 잔디 제거 업무, 경비, 건물관리, 주차관리, 목욕탕관리, 주유, 청소용역, 서빙 등의 직종을 신청하는 업체
-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보험회사의 설계사 신청업체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당해 사업장에서 실습하지 않는 근로자 파견업체, 인력공급업체(용업업체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현장실습 목적과 여건이 부적합하거나 근로조건이 위험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체

3. 실습기관 인정기준

구분	내용
실습기관 모집(섭외) 방법	○ 대학에서 직접 실습기관을 모집하는 경우 ○ 학과(교수)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실습기관 인정범위 분류	○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등 폭넓은 범위에서 인정함. 단, 대학교 또는 대학교의 부설기관(연구실, 연구소, 센터, 행정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음

4. 평가방법 및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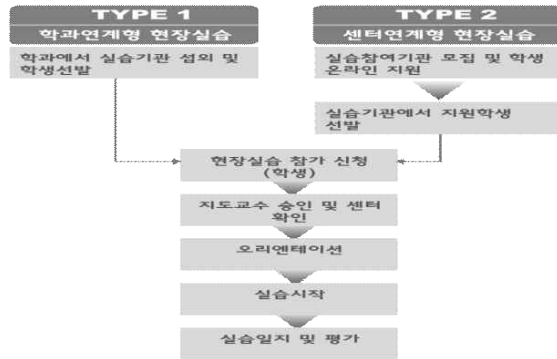
가. 평가는 실습생의 출근상황부, 주간활동보고서, 종합보고서, 현장실습기관성적표, 실습지도보고서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평가항목	점수	평가방법	평가자
출근상황부	10	결근 1회당 2점 감점	실습기관
주간활동보고서	15	작성유무 및 내용 평가	현장실습지원센터
종합보고서	15	작성유무 및 내용 평가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기관성적표	40	실습기관의 실습생 평가	실습기관
실습지도보고서	20	실습지도교수의 지도 평가	실습지도교수
합계	100	Pass / Fail	현장실습지원센터

나. 학점인정은 실습기간 및 신청 교과목에 따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해당 학점을 인정하며, '일반선택'의 교과구분으로 부여함

2 참가신청 방법

1. 실습유형 및 신청방법



가. Type 1 -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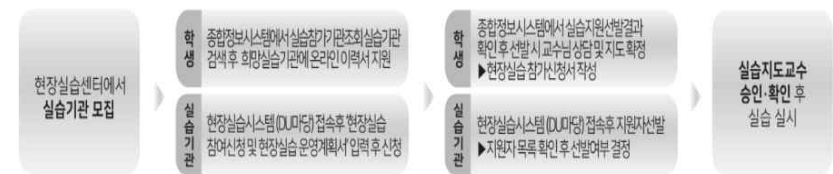
- 1) 학과(교수)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 2) 학과 교수님 상담 및 지도를 통한 현장실습 참가 확정
- 3) 실습기관, 실습기간 및 실습업무 등이 확정되면 해당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현장실습 참가신청 및 실습지도교수 승인 요청
- 4) 실습지도교수 승인 → 현장실습지원센터 최종 확인 후 신청 완료
 ※ 2013학년도 하계 이후 현장실습 참여실적이 있는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참가할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참여신청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이 경우 실습생은 반드시 해당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교수님과 사전 협의 및 실습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여야 함.

단,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 고시(2017.03.01.)에 따라 매 실습과정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은 실습과정 신청 시 실습운영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바람.



나. Type 2 -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 1)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 2) 시스템에서 이력서 작성 후 희망하는 실습기관으로 온라인 실습지원
- 3) 실습 지원결과 선발여부 확인 후 선발되었을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현장실습 참가신청→실습지도교수 승인 요청 → 실습지도교수 승인 → 현장실습지원센터 최종 확인 후 신청 완료
- 4) 지원 후 선발이 되지 않았을 경우(선발여부에서 탈락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기간 내 타 실습가능기관으로 지원 가능



3. 현장실습지원시스템을 사용한 신청방법

가. 실습유형별 현장실습 참가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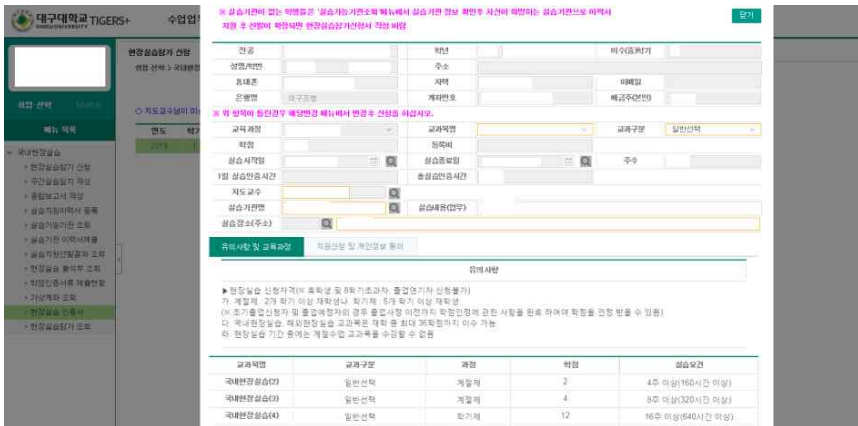
TYPE 1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

- 1) 학과 교수님과 상담한 후 실습기관을 추천받고 실습참가 확정
- 2)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3) '취업·산학' → '국내현장실습' → '현장실습참가 신청' 클릭



- 현장실습 참가신청서 작성



- 실습지도교수님을 검색한 후 '선택' 클릭



- 학생 개인정보사항은 학적시스템의 데이터이며 연락처, 계좌번호 등 정보

-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메뉴(학적, 등록/장학 등)에서 수정하여야 함
- 실습시작일과 종료일은 실습가능일 범위 내에서 4주 또는 8주의 기간을 충족하여야 저장이 되며 실습기간을 입력하면 교과목, 학점 등이 자동 입력됨
- 지도교수는 실습지도교수를 말하며, 현장실습을 지도하실 교수님을 '찾기' 메뉴를 통해 선택하고 해당교수님의 승인을 받아야 함(부득이한 사유로 선택한 교수님의 승인이 어려우면 지도교수를 변경하여 재지정 하여야 함)
- 위 입력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 버튼 클릭

TYPE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1)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조회'버튼 클릭 후 실습가능기관 조회

- 실습가능기관 계획서 '보기' 클릭 시 아래내용(실습정보) 확인



2) 실습가능기관 조회 후 실습지원을 위한 이력서 등록

※ 이력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실습기관에 선발될 가능성이 높음



3) 이력서 등록 후 '실습기관 이력서 제출' 메뉴에서 실습지원 클릭
- 실습기관 '찾기' 클릭 후 실습기관 선택



4) 실습지원 신청 후 선발결과 확인

- 실습지원 후 선발 대기 상태 : 이력서 '접수'로 표기됨
- 실습지원 후 해당 실습기관에서 선발을 확정하면 아래와 같이 이력서 '선발'을 확인 및 실습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신청서'를 클릭하여 현장실습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야지만 정상 신청됨을 유의바람.

* 유의사항

- 실습지원 상태 '접수' 및 '선발'일 경우에는 타 실습기관으로 중복지원 불가
- 실습지원 상태 '탈락' 및 '신청취소'일 경우에는 타 실습기관으로 지원가능 (단, 신청취소는 실습지원상태가 '접수'일 경우만 가능하며 현장실습센터에 별도로 요청 하여야 함.)

5) 선발 확정 후 '현장실습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버튼 클릭

- 현장실습 참가신청 시 실습지도교수님을 검색한 후 선택 (반드시 실습지도교수님과 실습에 관한 사항을 상담 후 학생의 실습관리 및 실습지도가 가능한 교수님으로만 선택가능 함.)

[공통사항]

나. 현장실습 참가신청 후 지도교수 및 현장실습지원센터 승인

- 1) 현장실습 참가신청 후 '현장실습신청서관리' 메뉴에서 신청상태 확인 가능
- 학생이 신청서 작성 시 : 상태가 '접수'로 표시됨



- 실습지도교수님이 '승인'처리 시 : 상태가 '신청대기'로 표시됨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최종 실습 '확인' 처리 시 : 상태가 '통과'로 표시됨



※ 상태가 '통과'로 확인되면 신청에 관한 모든 과정이 종료됨

다. 실습일지(주간실습일지, 종합보고서) 작성

1) 실습시작 후 '주간실습일지' 작성

-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시 평가자료로 활용됨
- 특수문자 입력금지 및 500byte이상 1000byte이하로 작성 후 저장 하여야 함.



2) 실습 종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

-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시 평가자료로 활용됨
- 특수문자 입력 금지 및 500byte이상 1000byte이하로 작성 후 저장 하여야 함. (단, 실습기관 소개 및 건의사항 글자제한 없음)



3 실습지도교수

1. 현장실습 참가신청학생의 실습지도교수 승인

학생이 현장실습 참가신청 시 실습지도교수 승인을 신청하면 지도교수가 교원 시스템에서 승인/미승인 처리

※ TIGERS+(교원) → 학사행정 → 취업(or 역량) → 국내현장실습 → 실습지도교수 승인

※ 조회 클릭하시면 학생 정보 조회 가능



※ 해당 학생 행을 클릭하면 실습참가신청서 내용 조회 가능

2. 현장실습 지도교수 협조사항

가. 현장실습 기관을 방문, 유선 또는 서면 등을 통하여 실습상황 점검

나.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애로사항, 출근 상황, 실습일지 작성상황 등을 점검하고 실습생의 실습상황을 평가하여 교원시스템의 '실습지도보고서' 작성(실습지도교수 참여 실적은 교원 봉사업적에 반영)

다. 현장실습지도를 위한 실습기관 방문 시 교직원 기업체방문을 신청할 수 있음

- 1) 메뉴 : TIGERS WEB+(교원시스템) 접속 - 학사 - 취업(or 역량) - 국내현장실습 - 실습지도보고서
- 2) 지도기간 : 학생 개인별 현장실습 기간
- 3) 우측의 '실습지도보고서' 및 '학생정보'의 등록 버튼을 클릭한 후 내용입력 및 학생평가 후 각각 저장



[별첨1]

현장실습기간 조건표

▶ 학점인정학기: 2020학년도 하계

계절제 현장실습 (4주)		계절제 현장실습 (8주)	
시작일자	종료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2020-07-06(월)	2020-08-02(일)	2020-07-06(월)	2020-08-30(일)
2020-07-07(화)	2020-08-03(월)	2020-07-07(화)	2020-08-31(월)
2020-07-08(수)	2020-08-04(화)		
2020-07-09(목)	2020-08-05(수)		
2020-07-10(금)	2020-08-06(목)		
2020-07-13(월)	2020-08-09(일)		
2020-07-14(화)	2020-08-10(월)		
2020-07-15(수)	2020-08-11(화)		
2020-07-16(목)	2020-08-12(수)		
2020-07-17(금)	2020-08-13(목)		
2020-07-20(월)	2020-08-16(일)		
2020-07-21(화)	2020-08-17(월)		
2020-07-22(수)	2020-08-18(화)		
2020-07-23(목)	2020-08-19(수)		
2020-07-24(금)	2020-08-20(목)		
2020-07-27(월)	2020-08-23(일)		
2020-07-28(화)	2020-08-24(월)		
2020-07-29(수)	2020-08-25(화)		
2020-07-30(목)	2020-08-26(수)		
2020-07-31(금)	2020-08-27(목)		
2020-08-03(월)	2020-08-30(일)		
2020-08-04(화)	2020-08-31(월)		

※ 유의사항
 - 하계 국내현장실습 실습기간의 경우 위 조건표상 기재된 기준일로 설정 가능함.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0.07.06.(월)~2020.08.02.(일) 4주만 설정 가능함
 - 주말 및 법적 공휴일은 실습시작일자로 설정할 수 없음.

[별첨2] 현장실습기관신청서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실습기관용)										
실습기관 정보	기관(기업)명				대표자명			직원수		
	업종/소개				사업자등록번호	-		-		
	홈페이지	http://			법인번호			-		
	주소	()								
실습생 내 용	DU마당 (실습생관리 홈페이지)	아이디				패스워드	※초기 패스워드 사업자등록번호 뒷자리 5자리로 접속 후 변경 가능			
		*가입하실 ID를 적어주세요								
	과정	계절제 국내현장실습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습일자	현장실습(2) 방학중(4주) ()			현장실습(3) 방학중(8주) ()			학기제 현장실습(4) 학기중(16주) ()		
모집인원	남(), 여(), 무관()			남(), 여(), 무관()						
실습장소	(위 주소이외의 장소일 경우)									
실습생 실 습 무 직	근무부서									
	실습업무				전공분야	반드시 관련전공 () 가급적 관련전공 () 전공무관 () 관련전공 :				
	1일근무시간	: 부터 : 까지(시간)			휴 무	공휴일(), 일요일()				
실습생 지 원 사 항	실습지원비	실습지원비 여부			O X		중식제공		O X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금액 (지급하는 경우에만 입력)	지급금액			() 만원		교통편제공		O X	
		취업연계형			O X		채용가능 인원수		남(), 여(), 무관()	
	기타사항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해해보상범위 적용범위」개정에 의거하여 모든 실습생은 산재보험적용 대상자임을 유의바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실습 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실습생 관리자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휴대폰(필수) : ·E-mail(필수) :			·회사번호 : ·Fax :		* 위 항목은 실습운영을 위한 필수항목이므로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위와 같이 국내현장실습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기관)명				신청인(대표)			(인)			
대구대학교 총장 귀하				학과(교수)확인			(인)			

* 회원가입 정보는 현장실습지원시스템 사용을 위한 DU마당 홈페이지(http://linc.daegu.ac.kr/duMadang) 회원가입 및 접속을 위해 필요한 로그인 정보이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회원가입을 하신 경우에는 '기가입'으로 표기 바랍니다.

[별첨3]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실습기관) ☞ 참여실습기관 필수제출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 실습 기간에 따른 주차별 계획 작성 (계절제 : 4주, 8주 / 학기제 : 16주, 20주)	
과정	2020학년도 계절제(하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 작성 시 포함 내용 - 오리엔테이션 : 실습기관 및 운영계획 소개 (실습기간 내, 1회, 8시간 이내) - 주제별 팀 회의 : 이론적 지식 기반의 분석 회의 (주 1회 이상, 24시간 이내) - 실험실습 : 정보수집 및 실습현장 문제해결 (주 4회 미만, 32시간 이내)	

※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수업의 형태를 갖춘 정규 교육과정이므로 실습과정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은 매 과정 실습신청 시 운영계획서를 반드시 작성 후 학교로 제출바랍니다.

기업(기관)명 _____ 신청인(대표) _____ (인)

[예시]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실습기관) ☞ 참여실습기관 필수제출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 실습 기간에 따른 주차별 계획 작성 (계절제 : 4주, 8주 / 학기제 : 16주, 20주)	
1주차	[예시] 오리엔테이션 : 실습기관 소개 및 실습 운영계획 소개
2주차	[예시] 주제별 팀 회의 : 캐릭터 디자인 만들기 실습
3주차	[예시] 실험실습 : 책 표지에 들어갈 삽화작업해보기
4주차	[예시] 실습결과보고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 작성 시 포함 내용 - 오리엔테이션 : 실습기관 및 운영계획 소개 (실습기간 내, 1회, 8시간 이내) - 주제별 팀 회의 : 이론적 지식 기반의 분석 회의 (주 1회 이상, 24시간 이내) - 실험실습 : 정보수집 및 실습현장 문제해결 (주 4회 미만, 32시간 이내)	

※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수업의 형태를 갖춘 정규 교육과정이므로 실습과정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은 매 과정 실습신청 시 운영계획서를 반드시 작성 후 학교로 제출바랍니다.

기업(기관)명 _____ 신청인(대표) _____ (인)

